

부가가치세편

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

황종대 세무사 :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
국세청 예규담당(전)

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

1.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

개념 정의

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 또는 부가가치로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“**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**”과 “**재화의 수입**”이라는 **거래행위**(동적상태)로 규정

재화의 범위

| 구 분 | | 구체적 범위 |
|-----|-----|--|
| 물건 | 유체물 |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축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|
| | 무체물 |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|
| 권 리 | |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유체물과 무체물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 |
| 기 타 | | 선하증권, 창고증권, 화물상환권 등 |

2. 용역의 범위

- 부가가치세법은 "용역"이란 재화 외에 **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의무와 그 밖의 행위**로 정의
 - 용역이란 **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 및 그밖의 행위**를 말함
 - **건설용역, 설계용역, 이미용용역, 부동산임대용역, 음식숙박용역 및 각종 서비스업**

3.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의의

공급시기의 중요성

- 재화 또는 용역의 **공급시기**는 **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**, **신고대상 기간을 결정**짓는 중요요소
- 실제 부가가치세 **거래징수**(세금계산서 발급)가 **있었더라도** 공급시기와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**가산세 부과, 매입세액 불공제** 등 불이익을 받게 됨
- 나아가 **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**를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**형사고발**까지 받게 됨에 유의(세금계산서 미발급도 마찬가지)

4. 재화의 공급시기

(1) 공급시기 일반

| 구 분 | 공급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(동산) | 대가의 영수에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|
|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(건물, 권리 등) |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¹⁾ |
| ③ 위 ①, 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| 재화의 공급이 확정(조건이 성취)되는 때 ²⁾ |

4-1. 재화의 공급시기

(1) 공급시기 일반

1)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

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매수자가 재화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통

소유권이전등기일, 잔금청산일,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

2)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

공급가액, 공급시기, 거래상대방이 결정되어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한 때

4-2. 재화의 공급시기

(2) 구체적 공급시기

중간지급조건부

- **중간지급조건부거래란?**
 - ① **재화를 인도하기 전**,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
 - ② **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** 지급받는 경우로서
 - ③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,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**기간이 6월 이상인** 경우를 말한다.
- **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**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.
 - 약정서상 기간, 대가수령 여부, 계약서 변경 효과

4-3. 재화의 공급시기

(2) 구체적 공급시기

완성도기준지급조건

○ **완성도조건부거래란?**

- 공급자가 건설공사 등에서 일의 완성도(진행률)를 측정하고 **기성고를 청구하며**, 공급받는 자는 **기성고를 확인**하고 대가를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라 한다.
- 그 공급시기는 **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**로 실지 대금의 수령 여부에 불문하며,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**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**로 한다.

4-4. 재화의 공급시기

(2) 구체적 공급시기

장기할부판매조건

○ 장기할부판매란?

-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·연부 그 밖의 부분방법에 따라 받는 경우로서

① 대가를 **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** 대가를 받고

② 해당 재화의 **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** 확정되어 있는 경우

-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,

일반할부판매인 경우 인도 또는 양도한 때가 공급시기임

5. 용역의 공급시기

(1) 공급시기 일반

| 구 분 | 공급시기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|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|
| ② 완성도기준지급, 중간지급·장기할부 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|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¹⁾ |
| ③ 위 ①, 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|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|
| ④ 완성도기준지급·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|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²⁾ |

5-1. 용역의 공급시기

- 1) 지급약정일로 그 약정일에 대가를 수령하였는지는 불문함
- 2)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